

(재)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2025년 제4차 직원 공개경쟁 채용 추가합격자 공고

「(재)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2025년 제4차 직원 공개경쟁 채용」 관련
추가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7월 31일
(재)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원장

I 추가합격자 명단

고용형태	직급	채용분야	응시번호(성명)
기간제근로자	매니저	(A) 청년센터 매니저	A-14(문○○)

II 임용등록 안내

- 대상자: 추가합격자
- 등록방법: 임용 제출서류 우편 또는 방문제출
 - 우편제출: 2025. 8. 7.(목)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
 - 방문제출: 사전 연락 후 방문 요망(044-251-3203)
- 등록기한: 2025. 8. 7.(목) 17:00까지
- 제출처: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경영기획팀(세종시 조치원읍 으뜸길 251)
- 제출서류

- ① 채용신체검사서(공무원), ② 주민등록등·초본, ③ 가족관계증명서,
- ④ 학위·경력·교육·자격사항 등 증명서류(원본), ⑤ 증명사진(1매),
- ⑥ 채용결격사유 체크리스트(서식1), ⑦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체체크리스트(서식2),
- ⑧ 청렴서약서(서식3) ⑨ 신원진술서(약식, 서식4)

*경력(재직)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모두 제출

- 임 용 일: 2025. 8. 11.(월) 예정
- 문 의 처: 채용담당자 044-251-3203, recruit@sjepa.or.kr

III 안내사항

- 임용등록은 기간 내에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, 해당 기간에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임용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.
- 임용포기 시 사전협의 후 임용포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임용은 결격사유 등 조회 후 최종 결정하며, 임용된 경우에도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경력사항 등의 허위 및 그 밖에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됩니다.

채용 결격사유 관련 체크리스트(확인서)

「재단법인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인사규정」 제12조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 임·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습니다. 이에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 하므로 다음의 확인서의 해당하는 문항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허위 작성 시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<해당되는 문항 □에 체크>

-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..... □
- 2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..... □
- 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..... □
- 4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..... □
- 5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..... □
- 6.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..... □
- 7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함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.. □
- 8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..... □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- 9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..... □
- 10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.. □
- 11.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..... □
- 12. 공직자 및 「공직자 윤리법」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또는 해임·파면 처분을 받을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..... □

20 년 월 일

성명

(서명/인)

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(확인서)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(제82조)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(제89조,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) 및 해임요구(제83조)를 받게 되므로, (채용, 근로)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 또한 「지방 출자·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」에 따라 임직원 친인척 직원의 수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므로 다음의 확인서에 해당되는 문항 □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해당되는 문항 □에 체크>

1. 공직자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..... 있음 없음

※ 공직자 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

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·임용·교육훈련·복무·보수·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,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

2. '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'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

(다만, 적발 시기는 재직중, 퇴직후 불문)..... 있음 없음

※ 부패행위 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

가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

나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

다.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

※ (예시) 성희롱, 성매매, 음주운전, 폭행, 단순업무상 과실, 복무위반, 불성실 : 비해당
금품요구, 편의수수, 공금횡령, 공용물 사적사용, 수당·여비 부당수령 : 해당

3-1.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..... 있음 없음

3-2. 위 퇴직일(당연퇴직·파면·해임일)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..... 해당 미해당

4-1.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..... 있음 없음

4-2.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(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)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..... 해당 미해당

5. 세종알자리경제진흥원 임직원 중 친인척에 해당되는 직원이 있는지 여부..... 있음 없음

※ 친인척 범위 : 배우자, 4촌 이내의 혈족·인척/ 인원 수 산정기준일은 입사일 기준

20 년 월 일

성명

(서명/인)

청렴 서약서

나는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입사에 따라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공기관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노력한다.

하나. 나는 어떠한 부정청탁도 받지 않으며 타인을 위하여 부정청탁도 하지 않는다.(개인)

하나. 나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정성과 청렴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.(직무)

하나. 나는 직무수행시 공평무사한 태도로 직무관련자들을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.(관련자)

하나. 나는 공정한 업무수행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선다.(조직문화)

“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”의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하겠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위의 청렴서약서에 동의합니다.

